

전자도서관과 저작권

최경수

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

98-09-07

저작권의 의의

☞ 목적

- ☞ “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”
- ☞ 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”
- ☞ “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”

☞ 의의

- ☞ 인간의 사상을 시각, 청각 또는 시청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‘독창적’으로 표현한 것(expressive information), 즉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.

98-09-07

저작권의 종류

- ☞ 인격권
- ☞ 공표권
- ☞ 성명표시권
- ☞ 동일성유지권

- ☞ 재산권
- ☞ 복제권
- ☞ 공연권
- ☞ 방송권
- ☞ 2차적저작물작성권
- ☞ 전시권
- ☞ 배포권
- ☞ 새로운 형태의 이용에 따른 권리

98-09-07

2

저작인접권

- ☞ 실연자의 권리
- ☞ 음반제작자의 권리
- ☞ 방송사업자의 권리

98-09-07

3

공익목적 저작물 이용

- ☞ 저작재산권의 제한
- ☞ 저작물의 인용
- ☞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한 이용
- ☞ 사적 복제
- ☞ 도서관 복제
- ☞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·녹화

- ☞ 비보호 저작물
- ☞ 법령
- ☞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고시, 훈령 등
- ☞ 법원의 판결, 결정 등
- ☞ 법정, 국회, 지방의회에서의 연설, 진술 등

98-09-07

4

공익목적 저작물 이용 (2)

- ☞ 보호기간
- ☞ 저작자 사후 50년
- ☞ 실연, 고정, 방송 후 50년

98-09-07

5

도서관 면책 규정

- ☞ 저작권법 제28조
 - ☞ 1. 조사, 연구 목적의 복제... 1인 1부
 - ☞ 2. 자료 보존 목적의 복제
 - ☞ 3. 다른 도서관 보존용 복제
- ☞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
 - ☞ 1. 비영리 목적
 - ☞ 2. 공개
 - ☞ 3. 저작권 표시

98-09-07

6

도서관 면책 규정 (2)

- ☞ 이발행 저작물의 보존 또는 도서관 교환 목적... 1부 복제, 모사 (facsimile) 형태 허용
- ☞ 발행 저작물의 복제물의 대체 목적... 1부 복제, 모사 형태 허용
- ☞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제4부 제413조
- ☞ 3부 복제, 디지털 형태 허용
- ☞ 일반 공중에게는 디지털 형태 제공 금지
- ☞ 저작권 표시는 그러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화
- ☞ 가상 도서관을 상정하지 않음

98-09-07

7

권리 처리(rights clearance) 방법

- ☞ 저작권의 본질
- ☞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
- ☞ 일신전속적인 인격권

☞ 집중관리단체

- ☞ 배경
- ☞ 저작권위탁관리업(신탁관리업)
- ☞ 재산권의 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

98-09-07

8

권리 처리 방법 (2)

- ☞ 해결 방안
- ☞ 저작권정보시스템 구축(저작물 정보, 권리 소재 정보, 이용조건 정보)
- ☞ 권리관리정보(rights management information) 구축
- ☞ 초록(요약) 서비스 제공업
- ☞ 권리자 집단(학회, 출판사, 협회) 공동의 권리처리센터 설립

98-09-07

9

전자도서관 구축

☞ 복제의 정의

☞ “인쇄, 사진, 복사, 녹음,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”

☞ 전문

☞

☞ 초록

☞ 서지정보

☞

98-09-07

10

전자도서관 서비스

☞ 폐쇄형

☞ 개방형

98-09-07

11